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학교법인 ◇◇학원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이사장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교원지위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원고는 ◇◇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교수임을 확인한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◇◇학원 산하 ◇◇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의 조교수입니다.
- 2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◇◇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.
 - 한편,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◇◇대학의 조교수로 승진하였는바, 이 경우 그 승진되는 직위에 근거하여 임용계약을 다시 하여야 하고, 또 그 계약기간도 피고법인의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1년의 임용계약을 맺도록 하여, 3년간 계속 1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- 3. 그 뒤 20○○. 12. 27.경 피고들은 원고의 교원계약기간 만료일이 다음해 1. 5.

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학년도부터는 교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 합니다.



그렇지만 원고는 ◇◇대학의 조교수이므로 정관 제51조에 따라 그 임용기간이 10년이고, 원고가 임용된 최후 계약의 효력개시일은 20○○. 1. 6.부터이므로, 원고가 위 개시일부터 10년 간, 즉 20○○. 1. 5.까지는 ◇◇대학의 조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.

4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교원자격을 부인하면서 연구수 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○○학년도부터 교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확인 받기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객원교수임용계약서

1. 갑 제2호증 계약만료통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 O O O . O O . 이 연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기	효 간	○○년(⊏ 소멸시효일람표) ※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

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・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

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학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